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90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임종득 · 박형수 · 이준석
안철수 · 김기현 · 김기웅
강명구 · 강승규 · 한기호
김예지 · 서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를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로,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를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현장실습과 채용연계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현장실습 수료자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 ----- ----- -----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 -----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4(현장실습과 채용연계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현장실습 수료자 채용 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39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평가 결과의 반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